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60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2023. 6. 27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
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제명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 ~ 제3조)

- 2021. 1. 7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가 전부개정되어 제명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개정 되고 일부 조항 이동으로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조례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)

III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60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총 4개 조문으로,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각 해당 조례 내용 중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을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안 제4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·

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변경하고,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처럼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이 변경¹⁾된 사항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전부개정(2021.1.7.)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- 따라서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한 것인바,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과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)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[시행 2023. 6. 27.] [대통령령 제33575호, 2023. 6. 27., 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,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며,~(이하 생략)~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로 한다.

제4조(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 제2조제2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